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6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3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측정장비 및 골밀도검사기가 설치됨에 따라 체력 측정검사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별표(수수료 및 진료비)에 검사 수수료 4종 신설 (안 별표)
 - 수수료액표 중 4번 검사에 관한 사항 중
 - 체력측정검사, 동맥경화측정검사, 체성분검사 및 골밀도검사항목을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9조
- 2)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 및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별표 제2호, 제3호”를 “별표 제2호, 제3호 및 제4호중 라항 내지 사항”으로 한다.

별표의 4. 검사란중 라항 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
4. 검사	라. <u>체력측정검사</u>	1회	8,000원	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수수료 면제
	바. <u>동맥경화 측정검사</u>	1회	4,000원	“
	바. <u>체성분분석검사</u>	1회	2,000원	“
	사. <u>골밀도검사</u>	1회	4,000원	“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의 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대 하여는 별표 제2호, 제3호 <신 _____ _____설> 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 ②~③ (생 략)	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-- ----- ----- ----- 및 제4호중 리함 내지 사함 ----- ----- ②~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(별표)					개 정 안(별표)				
수수료액표					수수료액표				
구 분	종 목	단위	금액	비 고	구 분	종 목	단위	금액	비 고
4.검사	가.~다. (생 략) <신 설>				4.검사	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체력 측정 검사	1회	8,000원	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수수료 면제
	<신 설>					마.동맥 경화 측정 검사	1회	4,000원	"
	<신 설>					바.체성 분분석 검사	1회	2,000원	"
	<신 설>					사.골밀 도검사	1회	4,000원	"